

# 검토 의견서

□ 검토자 : 컴퓨터공학과 현광민

개정안	검 토 의 견	
	수 정 안	사 유
제41조(학위논문의 심사)	② 석사학위논문심사는 1회로 한다. --> 1회 이상으로 한다.	1.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1회로 강제한 것이 맞는지 확인바랍니다. 즉 1회 심사에서 가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되는데, 수정 후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구 수정이 필요합니다.
제43조(구술시험)  ...,구술시험은 논문심사에 포함되어 실시할 수 있다.	<p>변경) 즉, 규정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,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정의해야 함.</p> <p>제43조(구술시험)</p> <p>...,구술시험은 논문심사에 포함되어 실시할 수 있으며,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, 그 결과를 논문 심사와 합산하여 학위 수여 조건의 만족을 결정한다. (점수는 적절하게</p>	<p>2. 구술 시험에 대해서 그 정의를 따로 함에 따라 그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. 즉, 구술 시험을 따로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의 보고, 논문심사 과정에서 구술 시험을 보는 경우 등에 대해서 시험은 있으나, 결과 기술 방법이 없습니다. 즉, 구술시험을</p>

	<p>조절)</p> <p>제48조(학위수여 요건)</p> <p>구술시험과 논문심사의 결과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석사과정은 60점 이상, 박사과정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, 구술시험에 불합격하면 논문심사에도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.</p>	<p>보는 경우 그 문제의 출제와 평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일반 시험관리와 같이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인지등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</p>
--	--	---